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5
----------	-----

2021. 9. 14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3일

-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, 문구를 정비함

나. 주요내용

-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 정비(안 제3조)
- 신용카드,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 보완(안 제20조)
=>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도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※ 수입증지: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,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**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**

<종이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장·단점>

구분	장 점	단 점
종이수입증지	- 다량구매 보관 용이	- 제조비용 증가, 위·변조 - 재사용 등 부조리 상존 - 고액수수료 민원사무 다량의 종이 증지 첨부 - 소인날인 수작업 처리 - 구매 접근성 저하 등
전자수입증지 (인증기, 카드, 인터넷 등)	- 무방문 납부 가능 - 소인 날인 불필요 - 신용카드, 인터넷 등 납부방법 다양 -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 가능 - 정산관리 용이 등	- 필요시마다 구매

- 또한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, 문구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(목적)**에서는, 사용된 약칭표기인 “수입증지(이하 “증지” 라 한다)” 를 제2조로 옮김. 이는 목적 규정에는 약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법령 입안·심사 기준(법제처)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3조**에서는, 각종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행 증지 및 현금납부에서 증지, 현금, 신용·체크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다양화한 것임.
 - 이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²⁾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³⁾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 - 또한,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, 사용료,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·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,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.
 - 이에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.
- **안 제4의2제1, 3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25조제1항**에서는, “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로 표현된 문구를 “제0조에 따라” 로 개정함.
 - 이는 “제0조에” “규정”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“규정” 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함.
- **안 제6조**에서는, 증지 인수 시 입회자 중 분임경리관을 삭제하고, 사용된 용어 중 “입회” 를 “참석” 으로 변경함.

2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3)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분임경리관(명칭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으로 변경)은,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1에 따른 회계과장, 각 담당관·과장으로 증지 인수 입회는 담당부서인 분임징수관⁴⁾의 참석만으로도 문제가 없음.
- 또한 용어의 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○ 안 제16조제4항, 제19조, 제20조, 제29조에서는 사용된 용어 중 “금고” 를 “도금고” 로 변경함.

- 현행 조례에서는 금고와 도금고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민원인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 이에 안 제6조제2항에서 “충청북도금고” 를 “충청북도금고(이하 “도금고” 라 한다)” 로 약어표기를 명시하고, 이하 “금고” 를 “도금고” 로 변경하여 용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함.

○ 안 제20조에서는, 신용·체크카드,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사용된 용어 중 “기타” 를 삭제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안 제27조제1항, 제28조에서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개상용어인 “비치하여” 를 순화 용어인 “갖춰 놓고” 로 변경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의 취지에 맞도록 신용·체크카드,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일부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
4) 분임징수관: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1에 따르면, 본청의 경우 세정담당관,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·과장

-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,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내용상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발의자 : 이숙애, 박형용, 이상욱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최경천

1. 제안이유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, 문구를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 정비(안 제3조)
- 신용카드,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 보완(안 제20조)
=>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98호
- 다. 협의 :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
- 라.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입증지(이하 “증지” 라 한다)” 를 “수입증지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증지란” 을 “수입증지(이하 “증지” 라 한다)란” 으로, “역무” 를 “행정서비스” 로, “충청북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 를 “(납부방법)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증지, 현금, 신용·체크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사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제는” 을 “제작은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)” 을 “(증지요금 계기의 사용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” 를 “도지사는 제4조에도” 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1. 증지요금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” 을 “제5조에 따라 제작된” 으로, “충청북도” 를 “도” 로, “분임징수관(분임경리관)이 입회” 를 “분임징수관이 참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금고” 를 “충청북도금고(이하 “도금고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수입증지 판매인)” 을 “(증지 판매인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입증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증지는 제9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아니한” 을 “않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타에” 를 “다른 곳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장금고에서” 를 “직장금고는” 으로, “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중에서” 를 “둘 수 없을 때 소속직원 중에서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입증지” 를 “증지” 로, “별지제1호서식에 의한” 을 “별지 제1호서식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판매인신고서” 를 “판매인 신고서” 로, “별지제2호서식에 의한” 을 “별지 제2호서식의” 로 한다.

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판매인” 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5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” 을 “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민원실내” 를 각각 “민원실 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민원실근무” 를 “민원실 근무” 로, “위탁하여 판매” 를 “위탁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조례에” 를 “조례를” 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9조에 의한” 을 “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의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매수하고자” 를 “매수(買收)하고자” 로, 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” 을 “별지 제3호서식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” 을 “제1항의” 로, 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” 를 “별지 제4호서식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고” 를 “도금고” 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증지제조에 소요된” 을 “증지 제작에 사용된” 으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금고는” 을 “도금고는” 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도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·체크카드,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 취급 부주의” 를 “취급 부주의” 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“타자치단체” 를 “다른 지방자치단체” 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4조에 따른” 으로, “의거” 를 “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거” 를 “따라” 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비치하여” 를 “갖춰 놓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사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” 을 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” 을 “별지 제5호서식의” 로, “비치하고” 를 “갖춰 놓고” 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금고” 를 “도금고” 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조례의 시행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(이하 “증지”라 한다)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수입증지----- ----- -----.		
제2조(정의)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청북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.		제2조(정의) 수입증지(이하 “증지”라 한다)란 ----- 행정서비스----- --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.		
제3조(적용범위) ①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		제3조(납부방법) 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증지, 현금, 신용·체크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		
제4조(증지의 발행) ① 증지는 충청북도 명의로 발행한다. ②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		제4조(증지의 발행) ① ----- 도 ----- -----.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----- -----.		

<p>③ 증지의 <u>조제</u>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제작은 ----- -----.</p>
<p>제4조의2(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)</p> <p>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.</p> <p>1. 수입증지요금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의2(증지요금 계기의 사용)</p> <p>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증지요금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증지인수 및 보관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수입금출납원(이하 “출납원”이라 한다)과 <u>분임징수관(분임경리관)</u>이 <u>입회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인수한 증지는 <u>충청북도금고</u>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증지인수 및 보관) ① 제5조에 따라 제작된 ----- -----도 ----- -----<u>분임징수관이 참석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충청북도금고(이하 “도금고”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수입증지 판매인) ① 수입증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할 수 없다.

② 도지사는 직장 새마을금고,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(이하 “직장금고” 라 한다)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.

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제7조(증지 판매인) ① 증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-----

--- 않은 -----.

② -----

----- 다른
곳에-----
-----.

③ 직장금고는 -----
둘 수 없을 때 소속직원 중에서-

-----.

제9조(판매인 신고등) ① 수입증지를 판매(이하 “판매인” 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지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직장금고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이사장,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(이하 “이사장” 이라 한다)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삭 제

④ 도지사는 판매인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

제9조(판매인 신고등)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판매인” 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 증지-----

별지 제1호서식의 -----
-----.

④ ----- 판매인 신고서-----
----- 별지 제2호서식의

<p>에 의한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</p>
<p>제11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)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<u>5일전에</u>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) ① ----- ----- --- <u>5일 전에</u> 별지 제8호서식의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증지 판매소는 <u>민원실내</u>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민원실내</u>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급고는 소속기관 <u>민원실근무</u>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----- - <u>민원실 내</u>----- -. --- <u>민원실 내</u>----- ----- ----- <u>민원실 근무</u> ----- ----- <u>위탁</u>----- -----.</p>
<p>제13조(폐지신고의 수리) ① (생략) ② 판매인이 이 <u>조례</u>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	<p>제13조(폐지신고의 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조례</u> ----- ----- ---</p>
<p>제14조(판매인의 승계) 판매인의 사고, <u>기타의</u>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</u>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판매인의 승계) ----- - <u>그 밖의</u>----- ----- <u>사유 발생일</u> <u>부터 5일 이내에</u> 제9조의 ----- ----- ---</p>
<p>제16조(증지취급 및 매수) ① 판매인이 증지를 <u>매수하고자</u> 할 때에</p>	<p>제16조(증지취급 및 매수) ① ----- ----- <u>매수(買收)</u>하고자 --</p>

<p>는 출납원에게 <u>별지 제3호서식</u>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 <p>③ 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<u>별지 제4호서식</u>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금고</u>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별지 제3호서식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제1항의 -----</p> <p>--- <u>별지 제4호서식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<u>도금고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7조(변상책임)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<u>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변상책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증지 제작에 사용된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9조(판매인의 수수료)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<u>금고</u>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. 다만, 계기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9조(판매인의 수수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도금고</u>는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<u>제20조(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)</u></p> <p>① <u>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20조(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)</u></p> <p>① <u>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도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·체크카드, 전자결제 등으로 납</u></p>

<p>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 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계기의 고장 및 <u>기타</u>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되,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	<p><u>부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취급 부주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<u>타자치단체</u>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한 후 <u>제14조의</u>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<u>의거</u>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<u>의거</u> 청구인에게 제19조의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 ----- ----- <u>다른 지방자치단체</u> -----. ----- <u>제14조에</u> 따른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제27조(장부비치 및 검사)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<u>비치하여</u>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장부비치 및 검사) ① ----- ----- <u>갖춰 놓고</u> ----- -----.</p>

<p>② <u>도지사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<u>도지사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.</p>
<p>제28조(출납상황 정리) 출납원은 <u>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장부를 비치하고 증지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8조(출납상황 정리) ----- <u>별지 제5호서식의</u> ----- ---- <u>갖춰 놓고</u> ----- -----.</p>
<p>제29조(보고) ① <u>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29조(보고) ① <u>도금고</u>----- --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규칙) 이 <u>조례 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0조(규칙) -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□ 전자정부법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○ 사 유

- 본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,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